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2. 10. 4.(화)

www.jeonbuk.go.kr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0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1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2호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3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0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추진에 따라, 기존 조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및 기관명칭 변경
 - 1) 조례명 변경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2) 기관 명칭 변경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전북여성가족재단, 센터 → 재단(안 제1조~제12조)
- 나. 재단의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제2조)
- 다.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대한 명시(안 제3조)
- 라. 재단의 정관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제5조)
- 마. 재산의 조성 및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제7조)
- 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
- 사.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아. 행정지원 조항 신설 및 감사 및 감독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제11조)
- 자. 운영 규정 조항 추가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1조~제97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첨부
- 다. 협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예산과, 여성청소년과, 인권담당관
-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 (전화 : 063-280-2073, 팩스 063-280-25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담당자(전화 : 063-280-4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
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
10. 전라북도내 시·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재단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라북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 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 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제6조(재산의 조성) ②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위탁) ①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 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일반회 계)	인건비	2,372	2,431	2,492	2,554	2,618	12,467
	운영비	759	601	607	613	618	3,198
	사업비	308	308	308	308	308	1,540
합 계		3,439	3,340	3,407	3,475	3,544	17,205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주사 정지혜

붙임 2

관련법령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1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아동복지법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한 내용 신설(안 1호~ 7호)
- 아동복지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신설(안 제2조제10호)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원 10명이내에서 15명이내로 개정 (안 제3조제1항)
- 아동복지심위위원회 위원 중 추가되는 분야들이 있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르도록 개정 (안 제3조제3항)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 제13조)

- 아동보호조치 등과 같은 급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인권담당관,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전화 : 063-280-4789, FAX : 063-280-25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전화 : 063-280-4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

격을 갖춘 사람

나.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본문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퇴”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제척 등)”을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중 “위원회에 필요한”을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
-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3.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생략)

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기능)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9.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1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
----- 하며, -----
-----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
----- .

- 1. (현행과 같음)

<p>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u>아니하다고</u> 인정된 때</p>	<p>2. ----- ----- <u>않다고</u>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u>아니하여</u>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p>	<p>4. ---- 제6조제3항----- - <u>않아</u> -----</p>
<p>제6조(제척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 -----.</p>
<p>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p>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신설></p>	<p>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② ----- ----- ----- 1 이상-----.</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p>
<p>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비밀누설 금지) ----- ----- 누설해서는 안 ----- --.</p>
<p><신설></p>	<p>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p>

-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

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3.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 사회6급 양미선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2호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본 조례 2015. 5. 1. 일부 개정된 이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시행(2020. 10.1.)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안 제4조)
-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자문 사항 (안 제5조)
- 라.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의무 조항 (안 제7조)
- 바. 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의무 조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인권담당관,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불입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전화 : 063-280-4789, FAX : 063-280-25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전화 : 063-280-4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군, 진라북도교육청, 진라북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9. 삭제 <2016. 3. 22.>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

- 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 및 아동학대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기존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양미선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63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 요청*과 관련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483(2022.07.06.)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제1항)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및 의결”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

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제2항)

-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운영 (안 제13조)

- 정기회의 매년 “2회”에서 “1회”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인권담당관,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불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전화 : 063-280-4789, FAX : 063-280-25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전화 : 063-280-4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하기”를 “자문하기”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2조) 전단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두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전체 교체)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u>의결하기</u>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9조 (생략)</p> <p>제10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u>해촉</u>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u>회피</u>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회의 임기) <u>당연직</u>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u>위촉직</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u>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u>두 차례</u>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 (생략)</p> <p>제16조 (생략)</p>	<p>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자문하기</u> ----- ----- ---- <u>둘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p>제10조(해임·해촉) ----- ----- <u>해촉</u>할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u>----- ----- <u>회피</u>하 ----- ----- <u>여야 한다.</u></p> <p>제9조(위원회의 임기) <u>위원</u>----- ----- ----- <u>하며,</u> ----- <u>다만,</u>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u>1회</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김현욱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7호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12호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